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명 예 퇴 직 수 당 등 지 급
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예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세부운영(신청, 심사, 결정, 통지, 환수)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방의회의 의장 [시·도의회의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각각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각각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

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의5제1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항 제1호,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각각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각각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, 같은 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의6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) ① (생 략) ② <u>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 ③ · ④ (생 략)	제3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의회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---</u> 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)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· 인원 · 신청기간 · 지급방법 · 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	제5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)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)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<u>지방</u>	제6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지방

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(생략)

제7조(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·결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(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)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

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-----
----. -----
-----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·결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-----

-----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-----

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제7조의2(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)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.

1. 법 제2조 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(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: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) ① -----
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-----
--.

1. -----

---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

2. 법 제25조의5 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: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

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만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월봉급액은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, 정년잔여기간(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· 2. (생략)

지방회의 의장

2.

-----지방자치단체
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
의 의장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
통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
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
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
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
을 거쳐 신청인(제7조제1항 후
단의 경우에는 「민법」에 따라
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
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(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
자 결정의 취소) 지방자치단체
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
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
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
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
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
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
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
하여야 한다.

제8조의5(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
정산지급 절차 등) ①명예퇴직
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
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
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·
제1호의2·제1호의3 및 제3호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

제8조(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
통지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
방의회의 의장-----

제8조의2(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
자 결정의 취소) 지방자치단체
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-----

제8조의5(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
정산지급 절차 등) ①-----
-----지방자치단체의
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-----

명예퇴직수당환수 고지서(이하 “환수고지서”라 한다)를 교부하여야 하며,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무원(선거에 의해 임용 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) 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 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,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 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2

[illegible]

② (현행과 같음)

(3) -----

-----지방자치단
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-

-----.

-----.

1. -----

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: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

2.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: 재임용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

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(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)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(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)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

-----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

2. -----

-----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

④ -----

-----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-----

-----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-----

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
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
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
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
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
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(선
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
원은 제외한다)으로 재임용하는
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
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
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
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의6(형벌사실의 확인) 수당
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
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
제66조의2제3항제1호·제1호의
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
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
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
다.

제11조(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)
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
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
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
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

-----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
회의 의장-----
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
회의 의장-----
-----.

제8조의6(형벌사실의 확인) ----
---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
의회의 의장-----

-----.

제11조(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)

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 해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	----- 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방의회의 의장</u>----- -----.
제12조(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 의 심사·결정 및 통지) <u>지방자 치단체의 장</u>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 정하고,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 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제12조(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 의 심사·결정 및 통지) <u>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05 - 3356